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교육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과에 의사계와 의안계를 두되, 의사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의안계장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중 "14명"을 "15명"으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